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 경위

- 가. 발 의 자 : 김광수 의원외 10명
- 나. 의안번호 : 제1075호
- 다. 발의일자 : 2016. 3. 21.
- 라. 회부일자 : 2016. 3. 28.

2. 제안 사유

-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단체·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위원회 자체가 구성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운영근거 조항을 삭제함(안 제5조)

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

5. 검토 보고

가.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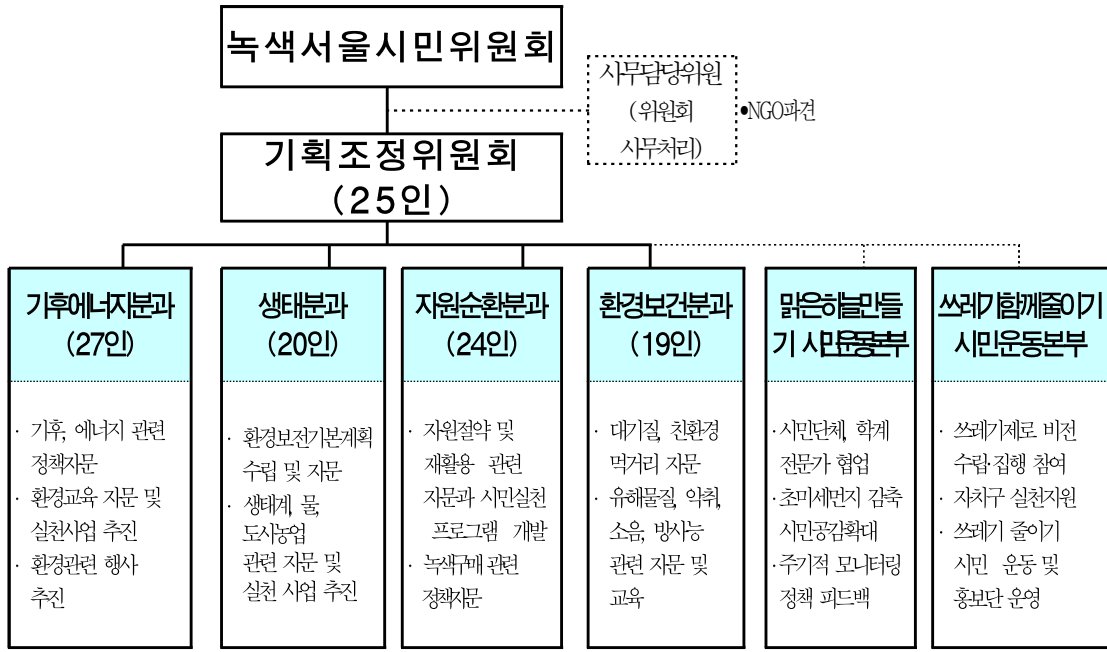
- 행정자치부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」을 통해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 방지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.
-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는 본 조례가 만들어진 후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침에 따르면 폐지대상에 해당됨.
- 본 개정조례안은 한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정비차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¹⁾의 자원순환분과위원회나 ‘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²⁾’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의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1)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조(기능) 녹색서울시민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~8.(생략)

9.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정책지원 및 녹색구매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등

2) 자문기구보다는 실행기구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음



<그림 1>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직현황

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